글로벌 건강과 간호(Global Health and Nursing) 심사규정

제정: 2010년 06월 01일
개정: 2011년 03월 14일
개정: 2012년 06월 12일
개정: 2013년 02월 22일
개정: 2016년 10월 30일
개정: 2022년 02월 01일
개정: 2022년 05월 11일

제1조. 본 규정은 '글로벌 건강과 간호(Global Health and Nursing, Global Health Nurs)' 투고규정에 따라 투고된 원고의 심사 및 게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논문의 심사 및 채택은 본 규정에 따른다.

제3조. 논문은 간호학 연구논문을 심사하며, 간호학 석·박사 학위논문 역시 동일한 심사과정을 거친다.

제4조. 각 논문의 심사위원명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5조. 논문은 연구 유형에 따른 평가서 기준 양식에 의거하여 심사한다.

제6조. 논문 심사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논문이 접수되면 투고자격과 투고규정에 부합하는지 확인한 후 논문 접수를 완료한다. 연구윤리관련 문제가 발생할 경우 본 학술지의 윤리 규정에 따른다.
2. 편집위원장이 온라인으로 논문 1편당 논문의 주개념과 전공분야에 합당한 3명의 심사위원을 선정한다. 공정한 심사를 위해서 투고자와 동일 기관 소속의 심사자를 가급적 배재하도록 한다.
3. 편집위원장이 온라인으로 논문 1편당 논문의 주개념과 전공분야에 합당한 1명의 편집위원을 선정한다.
4. 심사위원은 온라인상으로 논문 심사를 실시하여 심사평가지, 본문수정사항, 수정보완사항을 2주 이내에 기록하여 심사를 완료한다. 단, 논문심사 기간은 편집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1개월 까지 연장할 수 있다.논문이 투고규정에 맞는지 엄격하게 심사한다.
5. 일정 기일이 지나도 심사위원이 심사결과를 탑재하지 않을 경우, 필요시에는 편집위원장이 심사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
6. 심사위원 간의 상호의견 교환이 필요한 경우 편집위원장에게 연락한다.

제7조. 심사위원은 논문심사 규정을 공정하게 준수하여 투고자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한다.

1. 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심사위원은 심사에 있어 어떠한 편향성도 가지지 않고 원고에 대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2) 심사위원은 심사하는 원고에 대해 전문성을 갖추어야 하며, 전문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되면 편집자에게 이를 알리고 심사를 중단해야한다.
 3) 심사위원은 논문심사 중 저자를 인지하게 되고 이해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즉시 편집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4) 심사위원은 의뢰받은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심사기준을 준수하여 성실하게 평가한다.

5) 심사위원은 논문을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 관계를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논문을 탈락시키거나,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안 되며, 심사 대상 논문을 심도 있게 숙독하지 않은 채 평가해서도 안 된다.
6) 심사위원은 심사 중에 얻은 정보를 이용하거나 편집위원의 허락 없이 저자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해서는 안 된다.
7) 심사평은 건설적인 것이어야 하며, 저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적대적이어서는 안 된다.

2. 심사위원은 연구절차 및 결과 서술 등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편집위원회와 윤리위원회에 보고할 책임을 갖는다.

제8조. 편집위원회 임원의 논문 투고 시, 해당 논문의 심사위원 배정, 심사결과 판정 과정에서 해당 위원을 배제시킨다. 편집위원장이 투고를 하는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 중 일인에게 당해 논문의 심사과정 일체를 위임한다. 위임을 받은 편집위원은 논문의 심사에 관해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편집위원장의 역할을 대신해서 수행한다.

제9조. 심사위원은 심사결과를 심사 총평 및 심사평가 세부내용으로 작성하고 게재가능, 수정 후 게재가능, 수정후 재심사, 게재불가 등으로 결정한다.

1. 게재가능: 수정 없이 채택한다.
2. 수정 후 게재 가능: 심사위원이 지적한 사항을 저자가 수정한 후 편집위원이 이를 확인하고 채택한다.
3. 수정 후 재심사: 심사위원이 지적한 사항을 저자가 수정한 후 심사위원이 다시 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4. 게재불가: 논문의 내용이 다음 중 어느 한 항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 한한다.
 1) 연구 주제가 독창적이지 않거나 간호학적 유의성이 결여된 경우
 2) 이미 발표된 타인의 연구의 내용을 표절한 경우
 3) 연구 결과의 신뢰성이나 타당성이 결여된 경우
 4) 저자가 대폭적인 수정을 하여도 게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심사결과서에서 '매우 부족하다'로 평가된 항목이 30% 이상인 경우
 6) 수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0조. 심사위원 3인의 심사결과에 따른 수정표는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심사위원별로 정리하여 제출하도록 한다.

심사결과에 따른 수정표

논문제목 :

심사내용	답변 및 수정내용

제11조. 심사위원 3인에 의해 심사가 완료된 논문은 편집위원장이 선임한 편집위원이 10일 이내에 최종 심의를 완료한다. 편집위원은 제출된 논문이 심사위원의 지적사항에 따라 충실히 수정되었는지의 여부를 심의하고, 필요시에는 저자에게 재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심사위원 중 2명이 게재불가로 판정하였을 경우에는 게재할 수 없다.

제13조. 선임된 편집위원이 해당 논문에 대한 심의를 마치면 편집위원장이 논문 게재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수정이 미비한 경우, 추가 수정이 필요한 경우, 논문 유사도 검색 프로그램을 사용하

여 검사한 결과 유사도가 15% 이상인 경우에는 게재를 보류하고 저자에게 재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 심사내용은 저자이외의 사람에게는 공표하지 아니한다.

제15조. 최종 게재불가 판정된 원고에 대해 교신저자가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한 경우는 편집위원장이 편집위원들에게 이를 알리고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여부를 심의하여 결정한다.

제16조. 저자가 수정한 원고를 편집위원회의 수정 요청일로부터 1개월 이후까지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저자회수로 간주한다.(단,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1개월을 더 연장할 수 있다.)

제17조. 본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사항은 편집위원장이 관례에 따라 처리하고 편집위원회에 보고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3.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4.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5.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
6.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7.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5월 11일부터 시행한다.